

의안번호	제 249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7월 일 (제 273 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6월 30일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9
------	-----

제출연월일 : 2008. 6. 30.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7.4.12.)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2007.5.25.) 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 인용조항을 추가함.
(안 제1조)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안 제2조제2호)
-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변경(안 제4조제3호)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을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한다.

제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 (현행과 같음) 3. <u>전문계학교</u> 4.~5.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목적이)외 의사용금지) ①(현행과 같음) ②.....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3. (현행과 같음) 4. 「사립학교법」..... 5.~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8483호, 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④삭제 <2000.2.28>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 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 ⑤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 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부칙 <제20003호, 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설립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 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